



## 고용노동부, 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」 배포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0일(월)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(이하, '교육 가이드')」를 제작·배포하였습니다.

교육 가이드는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, 사전 준비, 교육 방법, 효과 검증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서는 목적 및 필요성, 종류, 강사자격, 교육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,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위해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방법, 업종별 위험 기계·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교육방법에선 교육주제, 환경마련, 강사선정,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형태를 제시하고,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 되었습니다.

이번 교육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(www.kosha.or.kr)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

### <<2023년 용역이행능력평가·공시를 위한 재무제표 제출 안내>>

'23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·공시를 위한 재무제표를 오는 '23.4.3(월)부터 접수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('23.4.17)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주요내용
신고기간	4.3(월)~4.17(월)까지(개인 및 성실납세기업 등 3·6월 결산업체의 경우 6.12(월)까지)
신고서류	재무제표 신고서 1부(협회 통합전산시스템上 출력 가능), 재무제표 1부
제출방법	협회 통합전산시스템上 전산신고 후, 신고서 및 재무제표 원본 협회 중앙회로 우편 발송
문의	한국건설자원협회 평가팀(☎02-3476-7787, 내선번호4)